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58회 제1차 정례회 (2022. 9.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국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22-102
- 나. 제안자: 고병준 의원 외 9명
- 다. 제안일자: 2022년 9월 13일(화)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2년 9월 14일(수)

2. 제안사유

마포구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공유재산 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등을 정비함.

3.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에 구의원이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 신설(안 제3조)
- 나. 위원 중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범위 명확화(안 제3조)

4.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5. 입법예고: 2022. 9. 13. ~ 9. 19.(제출된 의견 없음)

6. 검토보고

가. 개정 목적

- 동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마포구 의원을 심의회 위원에 포함되도록 하고, 마포구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제안되었음.

나. 조문검토

- 안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3항을 개정하여 위원 위촉대상자를 명시한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변경하고 제1호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1명', 제2호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으로 개정함.
- 그 밖에 같은 조 제5항을 관련 문맥에 맞게 어순을 정비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은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은 당연히 민간위원의 자격이 아니므로 불필요하게 규정된 문구는 삭제하여 규정을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조문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안 되었으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시 외부 민간위원은 물론 마포구 소속 공무원을 위촉 할 경우에도 해당 안전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가급적 배제토록 하는 등 심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 1. 20., 2021. 4. 20.>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는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 3. 31.>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0.>

③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